



: 2020-04-08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513 법인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조윤희, 전영준, 김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주호

피 고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정인철

2. 양산시장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51,068,452원의 부과처분 중 1,022,8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양산시장이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22,479,168



: 2020-04-08

원의 부과처분 중 450,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양산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산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은 2017. 9. 14.부터 2017. 9. 29.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4 사업연도 중간배당 시 주식회사 B에게 249,694,260,640원의 중간배당을 하고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2018. 3. 22.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 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산세 한도 규정)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1억 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들을 포함한 지방세 과세관청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인 249,649,260,640원에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0 제5항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499,298,520원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정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는바, 그 중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피고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8. 5. 15. 안분비율 10.22804%를 적용하여 51,068,452원의, 피고 양산시장(이하 '피고 양산시장'이라 한다)은 2018. 5. 11. 안분비율 4.50215%를 적용하여 22,479,168원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9조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액의 10/100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다가 구 지방세법이 2014. 1. 1. 쟁점 지방세법과 같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위와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가산세 한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 지방세법의 내용, 개정연혁,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그 한도액이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 1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남구청장의 처분 중 1,000만 원에 대한 안분비율 10.22804%에 따른 1,022,80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양산시장의 처분 중 1,000만 원에 대한 안분비율 4.50215%에 따른 450,2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위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가산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법인세 가산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경우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위 한도액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한도액인 1,000만 원(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1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남구청장의 처분 중 1,000만 원에 대한 안분비율 10.22804%에 따른 1,022,804원(= 1,000만 원 × 10.22804%)을 초과하는 부분이, 피고 양산시청의 처분 중 1,000만 원에 대한 안분비율 4.50215%에 따른 450,215원(= 1,000만 원 × 4.50215%)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위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구 국세기본법 제1조)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본문), 결국 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은 법인세법



과 가산세 등의 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건별로 위반된 세목의 산출세액이나 공급가액 등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과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세 한도를 정할 필요성은 지방세법상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1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시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구 지방세법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2014. 1. 1. 쟁점 지방세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위와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었던 지방소득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별도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독립과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율 변화 등 조세정책의 변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하고 재정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일 뿐으로, 해당 법률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하여 2014. 1. 1.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가산세 한도를 폐지하거나 조세 부담을 이전보다 가중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쟁점 지방세법 개정이유에서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함으로써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의 1/10에 해당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에서의 가산세율 또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 100분의 2의 1/10인 1천분의 2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 지방세법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으로 규정하였는데(개정 지방세법 제130조의30 제1항), 그 개정이유에서도 원고와 같은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할 뿐이고 쟁점 지방세법 하에서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등의 문제의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한도 규정이 없는 것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을 독립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법률의 공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조세정의의 원리인 공평의 이념구현을 위하여 합목적적 해석으로 세법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쟁점 지방세법 시행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지방세법 제130조의30 제1항에서 다시 구 지방세법이 규율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법인세 가산세의 10/100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사이에 시행된 쟁점 지방세법은 제130조의30 제5항에서 미제출 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세 가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이는 앞서 다)항에서 본 것처럼 입법자가 뜻하지 않은 '법률의 공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지방세법에 있어서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구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이 법인세 가산세액의 10%를 한도로 정해지는데 반하여, 쟁점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에는 그 한도가 정해진 바 없어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의 합계액이 법인세 가산세액의 약 500%에 근접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비하여 쟁점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므로, 합목적적 또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별지]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



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율 |
|------|----------------|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 과세 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 3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



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begin{array}{l}
 \text{법인지방} \\
 \text{소득세} \\
 \text{표준세} \\
 \text{산출세액}
 \end{array}
 \times
 \left[
 \begin{array}{cc}
 \text{관할 지방} & \text{관할 지방} \\
 \text{자치단체 안} & \text{자치단체 안} \\
 \text{종업원 수} & \text{건축물 연면적} \\
 \text{법인의} & \text{법인의} \\
 \text{총종업원 수} & \text{건축물 연면적}
 \end{array}
 \right]
 \div 2
 \times
 \begin{array}{l}
 \text{관할 지방자치} \\
 \text{단체의 법인} \\
 \text{지방소득세를} \\
 \text{법인지방소득세} \\
 \text{표준세율}
 \end{array}$$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감면세액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끝.